

서 울 특 별 시

우 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31번지 / 전화 (02) 731-6156 / 전송 731-6562

문서번호 법부 11010- 949

시행일자 1994. 6. 2(

경유 (제 1 안)

수신 내부결재

참조

취급		시 장
보존		
기획관리실장	전결	
법무 담당관		
법제 계장		
기안	이종범	협조

제목 서울특별시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규정등 3건 발령

1. 서울특별시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규정등 3건을 별첨
안파 같이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하고자 합니다.

첨부 : 1. 서울특별시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규정 1부.

2. 서울특별시민원사무처리요령개정요령 1부.

3. 서울특별시민원실내부운영규정폐지규정 1부. 끝.

훈령 제 911-호

(제 2 안)

수 신 : 공보 담당관

제 목 : 시보게재

1. 서울특별시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규정등 3건을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하기 바람.

첨부 : 서울특별시 훈령 제 801 호 2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기획관리실장 전결)

(제 3 안)

수 신 : 수신처 참조

제 목 : 훈령발령 통보

1. 서울특별시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규정등 3건을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토록 조치하였으니 업무에 참고 바람.

가. 발령예정일 : 1994. 6. 25.

첨 부 : 서울특별시 훈령 제 791 호(성약).

서 울 특 별 장

(기획관리실장 전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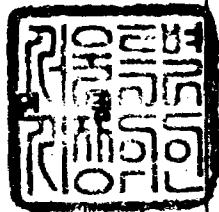
수신처 공보 담당관, 시민과

서울특별시수의단체신고예관한방률의반자과대표부국·경수규정

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94년 6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규정안

1. 제정사유

현행 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신고태만, 허위신고시 50,000원 이하)의 부과기준과 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위반행위 종류별 과태료부과 기준을 정함 (안 제2조).

위반행위종류	해태기간	과태료
신고태만	10일이하	35,000 원
	11일이상 20일이하	40,000 원
	21일이상 30일이하	45,000 원
	31일이상	50,000 원
허위신고	—	50,000 원

나. 과태료 부과절차와 서식등을 정함 (안 제3조 내지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 · 동법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필요없음

다. 합의 : 필요없음

라. 기타 : 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규정안 별첨

서울특별시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규정~~안~~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태료부과 기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 (과태료의 처분통지 등) ① 시장 또는 구청장이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당해 위법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납부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경우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4조 (과태료납부기한 등) ①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과태료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로 하고,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5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납부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구청장은 부과·징수된 과태료가 위법 부당한 것임이 확인 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취소·변경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시장 또는 구청장의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 시장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에 의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시장 또는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사항등을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과태료 부과·징수에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 및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별 표 >

과 태 료 부 과 기 준

(단위 : 원)

위반행위종류	해 태 기 간	과 태 료
신 고 태 만 (설립 · 변경 · 해산)	10일이하	35,000
	11일이상 20일이하	40,000
	21일이상 30일이하	45,000
	31일이상	50,000
허 위 신 고 (설립 · 변경 · 해산)	—	50,000

※ 비 고 : 신고태만 · 허위신고가 병합될 경우에는 그중 최고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별지 제1호서식 >

과태료처분통지서

제 호

수 신

제 목 : 과태료처분통지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 위반일시 :

나. 위반내용 :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를 제기한 때
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첨부 : 과태료 납부통지서 1부.

19 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 ○ 구 청 장

인

< 별지 제2호서식 >

과태료 남부통지서

(기인통지용)

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		
위반사항 : 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		
제 조 제 항		
납부의무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위의 과태료는 사회단체신고에
관한 법률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은행)에 납부
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19 월 일

수남일부인

서울특별시장

인

○ ○ 구청장

(수납은행 보관용)

제 호 과태료납부서		
위반사항: 사회단체신고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납부의무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19 년 9 월 일

수납일부인

(시 통보용)

제 호 영수필통지서		
위반사항: 사회단체신고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납부의무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19 월 일

수납일부인

서울특별시청 규하

○ ○ 구청장

과태료납부독촉장

납부의무자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과태료 납부통지서번호		
⑤ 위반사항	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	
⑥ 과태료금액		⑦ 당초납부기일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19 년 월 일 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19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구청장

인

< 별지 제4호서식 >

과태료부과취소(변경)통지서

주 소 :

성 명 :

① 고지금액	② 취소(변경)액	③ 차 액	비 고

취소(변경)사유 :

19 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 ○ 구 청 장

인

< 별지 제5호서식 >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청인		① 성명 (한자)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과태료 처분내역	④ 부과기준		⑥ 납부통지서번호	
	⑤ 고지받은일자		⑦ 과태료금액	
	⑧ 과태료처분사유			
⑨ 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의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 울 특 별 시 장 귀 하
○ ○ 구 청 장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

제 호

수 신

발신 서울특별시장 인
○○ 구청장

제 목 :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법 제 조와 관련입니다.

2. 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 제기가 있으니 비송
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	① 성 명 (한자)	②주민등록 번호
	③ 주 소	
과 태 료	④고지일자	⑥과태료 금액
처분내역	⑤부과기간	⑦이의제기일자

첨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 별지 제7호서식 >

과태료수납부

① 일련 번호	② 통지서 번호	③과태료 처분 통지일	④ 독촉장 발부일	납부기한		⑦ 금 액 (천원)	납부의무자		⑨ 과태료 납부일	이의제기	
				⑤당초	⑥독촉		⑧성명	⑩주소		⑪이의제기일	⑫법원통보일